



자유전공학과 운영 및 전공배정에 관한 규정

제정일	2023. 1. 1
개정일	
개정차수	차
담당부서	학사운영과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16조의 3에 따라 자유전공학과 운영 및 전공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정의) 전공배정이란 자유전공학과에서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학생의 학과(전공)를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제 3조 (적용대상) 이 규정은 자유전공학과로 입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제 4조 (교육과정) 자유전공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양 교과목과 진로 및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전공 교과목으로 편성하며, 타 학과에 개설된 전공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할 수 있다.
1. 교양 교과목 : 일반교양 교과목
 2. 전공탐색 교과목 : 학과별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전공 교과목
 3. 전공기초 교과목 : 본 대학교 개설 학과의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학과 지정 기초 교과목
- 제 5조 (수강신청) ① 자유전공학과 재학생의 전공기초 교과목 수강신청 기간은 본 대학교의 수강신청 기간으로 한다.
- ② 각 학과(전공)에서는 자유전공학과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전공기초 교과목을 지정하여 안내하여야 한다.
- ③ 전공기초 교과목(타 학과 교과목)은 해당 학과(전공)에서 전공기초 교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, 2개 이상 학과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전공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④ 학생 수강신청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 후에 시행한다.
- 제 6조 (전공배정 시기) 자유전공학과 입학생의 학과(전공) 배정 시기는 1학년 1학기 말에 실시한다.
- 제 7조 (전공배정 신청) ① 자유전공학과 1학년 1학기 이수자는 별표1의 전공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후 배정 학과(전공)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자유전공학과에서는 신청서 수합 후 학사운영과로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 전공배정 전 휴학을 할 경우에도 전공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전공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학과(전공)는 소속 학과에서 학생, 학부모와의 상담을 거쳐 대신 정할 수 있다.
- 제 8조 (전공배정 기준) ① 전공배정은 대상자의 희망 학과(전공)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전공배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
 - ③ 학과에 따라 입학 시 면접 또는 실기 전형을 실시한 경우 자유전공학과 학생의 전공배정 시 유사한 면접 또는 실기를 시행할 수 있다.
 - ④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는 학과(전공)는 교원확보율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학과(전공)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,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학생의 1학년 1학기 성적 순으로 배정한다.
- 제 9조 (이수학점 인정) 전공배정 시 자유전공학과에서의 기 취득학점은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.

자유전공학과에서의 이수과목		전공배정 시 이수구분
교양 교과목		교양선택
자유전공학과 전공 교과목		전공필수, 전공선택
타과 교과목	전공배정 학과 동일 교과목	전공선택
	전공배정 학과 이외 교과목	타과전공

제10조 (자유전공운영위원회) ① 자유전공학과의 교육과정 편성·운영 및 전공배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자유전공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를 소집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제11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학과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

2.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3. 학과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
4. 전공배정에 관한 사항

5. 기타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2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인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② 의결사항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
제13조 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 및 학사내규를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전공배정 신청서

신청자 인적사항	학과	
	학번	
	성명	
희망 학과(전공)명	1순위	
	2순위	
	3순위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공배정 시 배정학과의 <u>1학년 1학기를 포함한 전 교육과정의 전공필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함</u> - 졸업 요건 소속 전공 <u>최저학점(2년제:51학점/3년제:75학점)을 이수해야 함</u> - 배정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연한 내에 <u>관련 자격증 취득이 불가할 수 있음</u> - 전공배정 접수 후에는 <u>전공배정 학과를 번복할 수 없음</u> <p>※ 관련 규정 : 학칙 제16조의3(자유전공학과 전공배정), 학사내규 제38조(전공배정), 자유전공학과 운영 및 전공배정에 관한 규정</p>	
<p>본인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, 위와 같이 전공배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10px;">신청자 : _____(인)</p>		
<p>지도교수 : _____(인)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학과장(자유전공학과): _____(인) 학과장(배정학과) : _____(인)</p>		
<p>동서울대학교 총장 귀하</p>		